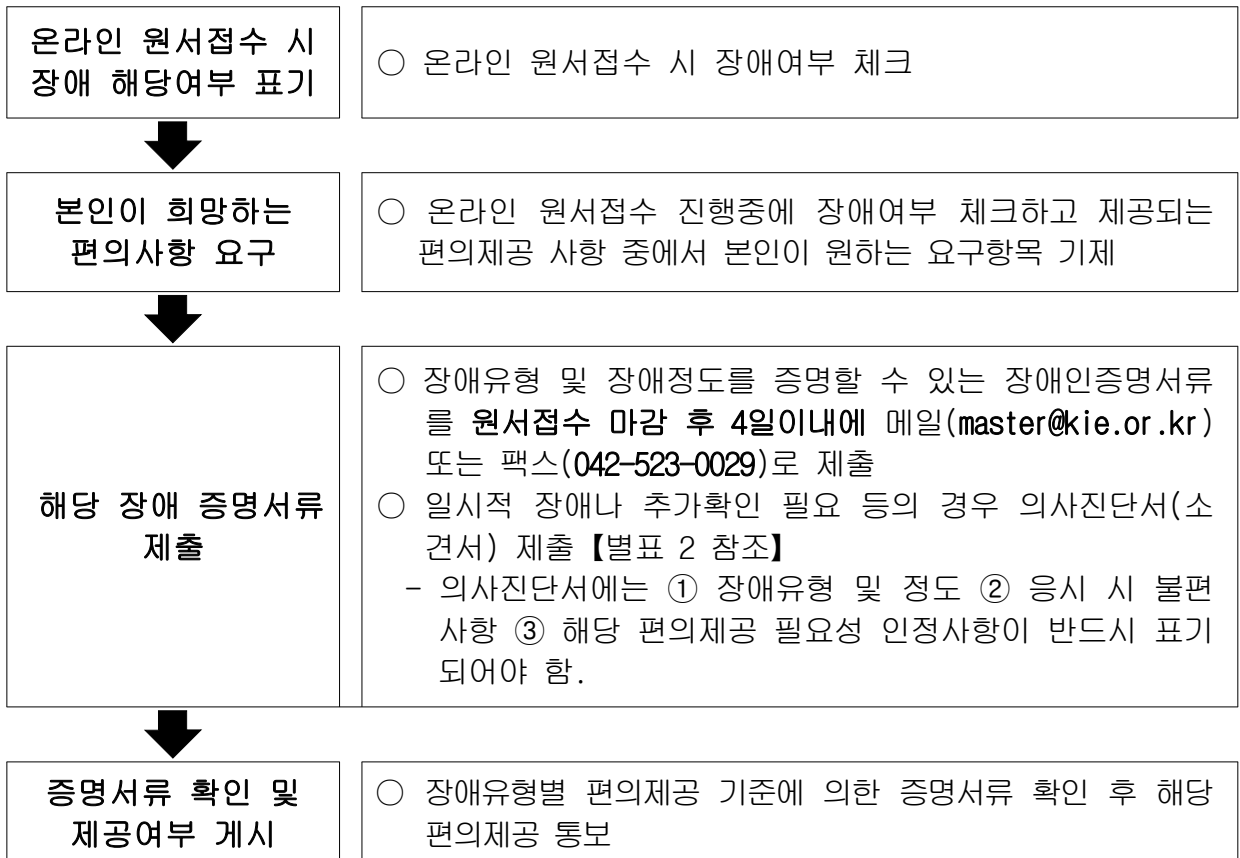


(사)한국정보평가협회 자격검정 장애인 등 응시 편의제공 안내

1. 편의제공 대상

- (사)한국정보평가협회 자격검정의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자 중 접수 마감일 까지
 - 『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』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.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.

2. 편의제공 신청 절차



3.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

-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원서접수 시 응시 편의제공 요청이 없거나 해당 장애증명서류를 기일(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)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 편의제공은 장애증명서류에 의하며, 원서 및 증명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**【별표1】**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제공 신청 항목 및 증명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**【별표1】**의 편의제공 내용과 증명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람
- 원서접수 진행 중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으로 ①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응시 시 불편사항 ③ 해당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사항이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 (**【별표2】**의 유의사항 참조)
 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(소재지)는,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c.or.kr) → [찾기서비스] → [병의원 및 약국 찾기]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가능함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청각장애나 언어장애로 인하여 ‘전화소통’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에 전화통화가 가능한 ‘대리인’의 연락처와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(사)한국정보평가협회의 자격검정에서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제공 승인을 받은 응시자(단, 일시적 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승인자 제외)는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제출을 면제합니다. 끝.

별표 1

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명서류

장애유형		편의제공 범위	증명서류	
시각 장애	중증(1급 ~ 3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수법 사용 · 필요시 답안 대필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①, ②, ③호 중 하나 · ①, ②, ③호로 검증 불가 시 ④호 추가 	
		· 시험시간 1.7배 연장		
경증(4급 ~ 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확대 시험지, 확대 답안지 · 필요시 답안 대필 가능 · 필요시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		
		· 필요시 답안 대필 가능		
뇌병변 장애	등급 구분 없음	· 필요시 보조공학기기지참 허용		
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		
지체 장애	상지 장애	중증(1급 ~ 3급)		· 시험시간 1.5배 연장
		경증(4급 ~ 6급)		· 시험시간 1.2배 연장
	하지 장애	등급 구분 없음 (척추장애 포함)	·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
		복합장애	· 상지장애와 동일	
청각 장애	등급 구분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화통역사 위촉 ·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		
기타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자	·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
	등급 구분 없음 (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-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		

1.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.

2. 확대 시험지 또는 확대 답안지는 120%, 150% 확대된 2종류 중 택 1

3. 증명서류의 종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**장애인등록증 명서 1부**.
- ②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**국가유공자증(사본) 1부**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**보험급여확인원 1부**.
-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**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) 원본 1부**. 다만, 일시적 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응시자 중 시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서 정한 **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) 제출**.

※ **의사진단서(소견서)**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것으로 ①장애유형 및 정도 ②응시시 불편사항 ③해당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유효함.

별표 2

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시 유의사항

1. 발급기관 :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※ 반드시 [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\(www.nhic.or.kr\)](http://www.nhic.or.kr)의 병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
2.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(원본)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장애유형 및 등급(정도)에 대한 구체적 진술 (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)
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(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)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(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)
 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확대 시험지, 시험시간 연장, 답안 대필을 신청할 경우
 - “확대 시험지 및 시험시간 연장, 답안 대필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”

- 온라인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(소견서)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의함.
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.

< 의사진단서(소견서) 발급 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 시
시 각 장애	6급	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 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에 해당하는 자 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	기 타	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 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
뇌병변 장애	경 중	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 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 로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